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
누락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삼척시

내 용

삼척시는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15. 3. 6.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운영³⁸⁾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³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삼척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해당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38) 예산액 : 2015년 403,000천원, 2016년 738,645천원

39)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명시 불필요.

그런데 삼척시(○○과)는 2014. 12. 15. ○○ ○○아파트(임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계획⁴⁰⁾을 수립한 후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제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⁴¹⁾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15. 3. 6. 공포하였다.

그 결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감사일 현재까지 존속기한이 누락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삼척시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0) 삼척시 ○○과-00000(2014. 00. 00.)

41) 삼척시 ○○과-00000(2014. 00. 00.)